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나354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나354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0210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황건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서동주

변론종결 2021. 11. 9.

판결선고 2021. 12.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0210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증여 목록 순번 1 내지 22 기재 각 증여일에 체결한 각 증여액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783,4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추가판단

피고는 D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합계 383,799,368원인데, 그 계좌에서 D이 운영한 H와 I 운영비로 각 60,908,250원, 102,501,750원, D 관련 법무 처리비와 합의금으로 각 45,640,400원, 132,354,250원, D이 운영한 주유소 공사비로 15,339,250원, D 소유 토지의 측량비로 2,000,250원, D의 회생채무 변제비용으로 47,500,750원, D의 벌금으로 2,000,500원을

각 사용하고, D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5,000,000원인바, D이 이체한 액수보다 더 큰 액수인 합계 413,245,400원을 D이 사용하였으므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출금을 증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출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역으로만 구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D이 사용하였다는 내역 사이에 지출 시기나 지출 액수가 유사하지 않은 점, 피고는 D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D이 부자관계이고, 동시에 여러 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D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지출금은 D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원, 판사 이상률, 판사 윤동연

별지